

# 부모사랑요양원 방역수칙 변경 안내

2022년 4월 22일 중수본 요양시설 대응팀

## 1. 대면 접촉 면회 한시 허용

○ 대상 : 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

- ① 전파차단을 위한 코로나 19 예방접종 기준 충족한 자  
(전파차단을 위한 코로나 19 예방접종 기준)

| 연령기준   | 미 확진자 |          | 기 확진자    |     |
|-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|
|        | 입소자   | 면회객      | 입소자      | 면회객 |
| 18세 이상 | 4차 접종 | 3차 접종 이상 | 2차 이상 접종 |     |
| 17세 이하 | 해당 없음 | 2차 이상 접종 |          |     |

②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된 후 격리해제 된자 (해제후 3일 ~90일 내)

○ 기간 : 2022년 4월 30일 (토) ~5월 22일 (일) 한시적 적용

○ 수칙 : 면회객 입소자 시설의 상호 동의 하에 진행하고 사전 예약을 통하여 면회객 분산, 별도 공간에서 방역수칙 준수하여 면회

※ 상호 동의를 한 경우 면회후 코로나 19 확진에 대한 시설 책임은 없음

### 면회 수칙

① 입소자 1인당 면회객 4명 이내 제한 - 사전 예약을 통하여 동일시간대 면회객 분산

② 면회는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실시 - 면회전 입소자 면회객 발열 확인

- \*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(RAT) 실시하고 음성 확인
- 음성은 종이증명서, SNS /문자 통지서 제출, 일반 신속항원검사 키트는 면회객이 지참
- 확진후 45일 이내의 경우 PCR 및 RAT 검사 제외

\* 마스크 (KF 94, N95) 착용+ 발열체크+ 손소독후 면회 장소 입장

③ 면회시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를 하거나 음식 음료 섭취는 불가

④ 면회객 접종완료 여부 - 예방접종 증명서로 확인

(종이 증명서, 전자 증명서, 예방접종 스티커)

⑤ 면회객의 코로나 19 확진후 격리해제 여부 -

(격리해제서 또는 종이 증명서, SNS/문자 통지서)

⑥ 면회전 방문자 명부작성, 체온측정, 손소독 실시

⑦ 코로나 19 의심증상 : 발열 인후통, 기침 등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력, 확진자 접촉 여부  
위험 요인시 면회 불가

⑧ 면회후 면회공간을 소독하고 최소 15분 이상 환기

○ 가정의 달 접촉 면회 안내 ( 대면 면회 대상 기간과 동일)